

# 자체평가규정

2009.10.26. 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체평가의 정의)** 자체평가라 함은 본교가 대학 자체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평가영역)** 평가영역은 ‘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’ 제6조 1항의 공시대상정보와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,

1. 학교발전계획 및 경영
2. 교육
3. 연구
4. 학생 및 전문가 지원
5. 국제화
6.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

**제4조(자체평가위원회 구성)** ①원활한 평가 수행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은 총장이 임명,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로 구성하며 필요시 학생 대표 및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④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**제5조(평가위원회 기능)**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및 심의한다.

1.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
2. 자체평가 지표개발
3. 자체평가 실시
4.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
5. 총장에게 자체평가 결과 보고
6. 자체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
7. 자체평가 지표 실적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평가위원회 회의)** ①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평가위원회의 간사는 행정팀장이 담당한다.

**제7조(소위원회등)** ①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어 <제5조: 평가위원회 기능>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

②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,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.

**제8조(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)** 자체평가 해당 기관 및 부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평가에 관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평가지기 및 절차)** ①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다.

②평가는 평가계획수립, 평가실시, 평가결과 공개의 절차로 진행된다.

**제10조(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)**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각 부서장에게 해당 학년도 자체평가 지표별 실적을 통보하고, 각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한다.

**제11조(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시)** ①자체평가의 결과는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,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·연구의 질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②자체평가의 결과는 본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.

**제12조(대학평의원회 보고)**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사항은 대학평의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**제13조(기타)**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(2009.10.26. 공포)